

"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"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



한국가스공사

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 목 수입부과금 환급 재개 알림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(부과금의 환급 등)

3. 위와 관련,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(‘19.4.1)으로 천연가스
열병합용 수입부과금 환급이 아래와 같이 재개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애 래 -

- 시행일 : ‘19.04.01 ~
- 대상 : 집단에너지사업자,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, 자가용전기설비
- 적용단가 : 3,800원/Ton (기준 : 24,242원/Ton)
※ ‘19.01.01 ~ 03.31 공급분은 기준단가로 소급적용

구분	환급대상	적용단가
‘19.04.01 이후 공급분	집단에너지사업자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	3,800원/Ton
‘19.01.01 ~ 03.31 공급분 (소급적용)	구역전기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	24,242원/Ton

※ 별도의 관련법 개정사항 발생하지 않는 한 중단 없이 계속 환급 실시.

※ 기존 구역전기사업자는 ‘19.4.1일부로 환급대상명에서 제외되었으나 집단에너지사업자와
신·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중복지위로 실질적인 환급대상임.

첨 부 :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부. 끝.

한국가스공사사장



수신자

서울도시가스(주), 코원에너지서비스(주), (주)예스코, (주)커뚜라미, (주)대륜E&S, 인천도시가스(주), (주)삼천리, 씨엔씨티에너지(주), JB(주), 충청에너지서비스(주), (주)미래엔서해에너지, 전북에너지서비스(주), 전북도시가스(주), (주)해양도시가스, 목포도시가스(주), 전남도시가스(주), 대화도시가스(주), 군산도시가스(주), 대성에너지(주), 서라벌도시가스(주), 영남에너지서비스(주)구미, 영남에너지서비스(주)포항, 대성청정에너지(주), (주)부산도시가스, (주)경동도시가스, 경남에너지(주), (주)지에스이, 참빛원주도시가스(주), 강원도시가스(주), 참빛충북도시가스(주), 참빛도시가스(주), 참빛영동도시가스(주), 명성파워그린(주)

주임

김상완

차장

정세향

부장

전결 03/29
김기섭

협조자

시행 도시가스영업부-650 (2019.03.29.) 접수 ()

우 41062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/

전화 053-670-0895 전송 053-670-0117 / sangwan@kogas.or.kr / 공개
Next Energy, with KOGAS

불공정 거래행위 및 갑질행위 신고전화 053-670-0112